

##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

## 서문

대한민국 정부(이하 “한국” 이라 한다)와 뉴질랜드 정부(이하 “뉴질랜드” 라 한다) (이하 집합적으로는 “양 당사국” 이라 하고, 개별적으로는 “당사국” 이라 한다)는,

양국 간 오랜 우호 및 협력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,

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,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, 그리고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,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예상하며,

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,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,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장려하고,

양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것과 양국 영역 간에 이 협정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피할 것을 추구하며,

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,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, 양국 경제의 역동적 분야 내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,

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,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,

공통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노동 및 환경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증진하려는 희망을 인정하고,

정부 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상품,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을 규제하고 상품,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양국의 권리를 인정하며, 공공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유연성을 유지하고,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당사국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,

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,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(APEC)의 목표 및 원칙과, 이 지역에서의 양 당사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발전시키기를 결의하고, 그리고

진행중인 더 폭넓은 다자 및 지역 경제자유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지속적 중요성, 그리고 경제자유화 절차가 양 당사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여지

를 인정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